

EU Brief

| EU 동향 |

-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정치적 의미에 대한 소고
Political Significance of Croatia's entry into EU
- 부실 확대로 은행 구조조정 압력 증가
Poor Management of Banks Imposes More Pressure on Restructuring
- 東西의 기로에 선 우크라이나
Ukraine Stands at a Crossroads
- 한-EU FTA 발효 후 2년간의 실적과 평가
Korea-EU FTA: Achievement and Assessment of past 2 years
- EU의 전자산업 육성책: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EU's Efforts to Revive Electronics Industry



YONSEI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EU의 구글 경쟁법 위반 혐의 조사 동향

EU's Investigation on Google Violating the Competition Law

Misusing the dominant position and distorting the market competition is prohibited according to the competition law, and the EU prohibits the abuse of dominant position in Article. 102 of TFEU(Treaty on the Function of the EU). Established in 1998 based on the 'Page Rank' technology developed by Larry Page and Sergey Brin, Google provides internet searching and online advertisement services and is expanding its business areas to other sectors such as mobile operation system, etc. Because it runs the world's largest searching website and maintains the overwhelming position in the market for Android Operating System, its competitors, both companies and countries, are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suspicion of its violation of the competition law.

사업자가 정당한 경쟁방법을 통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의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것은 경쟁법상 금지되어 있다. 「EU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Treaty on the Function of the EU)」 제102조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Abuse of Dominant Position)를 금지하고 있다.¹

스탠포드 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개발한 '페이지랭크' 기술을 기반으로 1998년 설립된 구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검색 서비스 및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운영체제 사업 등으로 점차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인터넷 시대의 대표 기업인 구글은 현재 세계 최고의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고, 안드로이드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경쟁업체와 EU 등 세계 경쟁당국은 구글의 경쟁법 위반 혐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1. 온라인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구글은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의 온라인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약 90%에 이르는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알려져 있다. 경쟁사업자들은 온라인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의 경쟁법 위반 행위를 EU 경쟁총국²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EU 경쟁총국은 구글의 경쟁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였다.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EU 경쟁총국은 2010년 11월에 마이크로소프트, 페어서치³, 파운덤이 구글의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함에 따라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2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아래와 같이 4가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발견하였다.⁴

(1) 검색 결과에 자사의 전문검색서비스를 경쟁업체 서비스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한 행위: 구글은 주력 서비스인 일반검색서비스 외에 구글 쇼핑, 구글 플레이스 등 전문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일반

¹ 「EU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2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체 시장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회원국 간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동체 시장 질서에 위배되어 금지됨. 남용행위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
a) 직접, 간접적으로 부당한 구입 또는 판매가격이나 기타 부당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b) 생산, 시장 또는 기술적 발전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c) 동등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이한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경쟁상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하는 행위
d)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하여 그 속성이나 상관행상 계약의 목적과 관계가 없는 부수적인 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하는 행위

²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Competition
³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오리클 등 17개 검색 및 기술 업체로 구성된 국제연합
⁴ European Commission (2013). Commission seeks feedback on commitments offered by Google to address competition concerns (EC Memo/13/383).

한-EU 기업 간 협력방안을 모색

EU집행위의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산업 지원책은 민간 부문이 수립한 계획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주요 나노 전자 기업들은 이미 2012년 12월에 1,000억 유로 규모의 민간 공동 투자계획(2013~2020년)을 제안했다.¹¹ 민간기업 단체는 유럽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재설치하고, 이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850억 유로, 자본지출 15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 계획을 통해 2020년에는 유럽 나노 전자산업의 R&D 투자규모가 50% 증가하고, 유럽의 반도체 생산업체와 반도체 사용업체의 매출이 2,000억 유로 이상 증가할 것이며, 25만 명의 직간접적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계획도 EU집행위의 계획과 같이 나노 전자산업 가치사슬과 혁신사슬의 모든 참여자가 협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EU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EU는 한국 부품업체들의 경쟁자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역내 부품 생산 확대에 힘입어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부품을 사용하는 스마트에너지, 헬스케어와 같은 신성장 산업을 주도하는 EU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EU가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부품 산업을 육성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관련 산업에서 더욱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반도체 공정장비 생산에서도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EU 기업들도 지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2012년 8월 네덜란드의 반도체 노광 장비 업체인 ASML의 지분 인수와 연구개발에 7.8억 유로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¹³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은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부품을 사용하는 EU 기업들과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EU 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¹¹ European Commission (2013). Five major projects announced as part of new EU Electronics strategy (Memo/13/466).
¹² AENEAS & CATRENE (2012.). Innovation for the future of Europe: Nanoelectronics beyond 2020.
¹³ "삼성, ASML에 7억 7,900만 유로 투자". (2012.8.27.). 『조선일보』.

과거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통합 및 대체해 지원 프로그램을 간소화하려고 한다. EU집행위, 회원국, 산업 간 3자 협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JTI는 파일럿 프로그램 등 자본집약적인 기업 활동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3) 인적 자원 육성 및 인프라 공유: EU집행위는 “e-기술 이니셔티브” 등 기존 프로그램을 지속해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산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EU집행위는 학계와 회원국이 연구 인프라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생 기업과 중소기업이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기술을 개발 및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러 5월 29일에는 EU집행위가 EU의 새로운 전자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5대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표했다.¹¹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제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모든 분야 및 단계의 기업과 대학의 연구역량을 연계해 최상의 마이크로 및 나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칩 설계자, 중간부품 생산자, 최종 사용자 등을 연계해 개발 과정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고 한다. 5개 파일럿 프로젝트에는 EU집행위의 1.1억 유로를 포함해 총 7.3억 유로가 투자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5대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전자산업 육성정책의 5대 파일럿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주요 연구 분야	참여 파트너 기업 수	완료 시기
프랑스 AGATE	질화갈륨을 사용한 제품 생산 및 상용화	10	2015년 12월
네덜란드-벨기에 E450EDL	450mm 웨이퍼 공정	43	2016년 9월
오스트리아 EPPL	전력 전자소자 생산	31	2016년 3월
이탈리아 Lab4MEMS	스마트 센서 및 액추에이터 생산	20	2015년 6월
프랑스-독일 Places2Be	FD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 기술 상용화	23	2015년 12월

자료: ENIAC (2012.). Communication to the Governing Board of the ENIAC Joint Undertaking regarding the selection of project proposals and the allocation of public funding following negotiations for Call 2012-2 (ENIAC-PAB-164-13).

검색 시 이러한 자사의 전문검색서비스 결과를 경쟁업체의 유사 서비스 결과보다 상위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유리하게 취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더 많이 관련 있는 정보를 선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에 사업상 불이익을 주어 전문 검색서비스 제공에 있어 혁신을 꾀할 유인을 감소시켰다.

(2) 전문검색서비스 경쟁업체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동의 없이 사용: 구글은 자사의 전문검색서비스에서 경쟁 전문검색서비스의 사용자 리뷰 등 콘텐츠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함으로써 경쟁사의 투자 이익을 전용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경쟁업체의 인터넷 사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콘텐츠 개발 투자유인을 감소시켰다.

(3) 웹사이트 운영자와 배타적 온라인 검색광고 계약 체결: 구글의 광고 프로그램 중 '애드센스(AdSense for Search)'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검색창을 전시하고, 웹사이트 사용자가 그 창에서 검색을 하고 광고를 클릭하면 그 광고 수익을 구글과 웹사이트 운영자가 공동 분배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애드센스 계약상 웹사이트 운영자는 구글의 경쟁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검색 광고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배타적 계약은 검색광고 중개 서비스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구글의 광고 프로그램 이용 시 경쟁사 플랫폼으로 온라인 검색광고 데이터의 이동 및 관리를 제한하는 계약 체결: '애드워즈(AdWords)'는 광고주가 구글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글 웹사이트와 애드센스에 가입한 제3자의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구글의 광고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계약상 광고주는 애드워즈 광고에 사용한 광고카피를 경쟁업체의 광고 플랫폼으로 옮겨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은 광고주들이

구글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이트에 온라인 검색 광고를 병행하게 만들어 비용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한다. 이러한 제한은 광고주나 소비자에게 어떠한 이익도 되지 못하고, 서비스 혁신을 경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EU 경쟁총국의 조치와 구글의 자진시정방안

EU 경쟁총국은 앞서 언급한 혐의들에 대하여 구글에 시정방안 제시 기회를 부여하고, 시정 방안을 협의해왔다. 2013년 4월 26일 구글의 자진시정방안(commitment)⁵을 공개하고 경쟁업체 등 제3자로부터 시정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market test)에 착수하였다.

구글은 자진시정방안에서 위반혐의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① 사용자가 구글의 전문검색서비스와 일반 검색서비스 결과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② 모든 전문검색 웹사이트에 구글에 의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하며 언론사 등에 자신의 콘텐츠 사용 통제권한을 부여하여 경쟁사 콘텐츠 무단사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③ 계약 상대방인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구글의 온라인 검색광고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④ 광고주들의 경쟁사 광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치를 약속하였다.

2. 스마트폰 및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구글은 2011년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면서 핵심적인 휴대폰 표준 특허들을 취득하였고, 최근 모토 X라는 스마트폰을 출시하여 스마트폰 제조 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도 약 7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 경쟁총국은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후 스마트폰 표준기술 특허의 행사와 관련하여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그리고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EU 경쟁총국은 2013년 5월 6일 구글의 자회사인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스마트폰과 관련된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를 이용하여 유럽 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당초 모토로라는 애플이 자사의 스마트폰 표준필수특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을 독일 법원에서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애플은 EU 경쟁총국에 모토로라를 반독점 혐의로 제소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표준필수특허는 무선통신업계에 필수적인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표준과 관련된 것으로서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기술표준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기술이다. EU 경쟁총국은 2012년 2월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승인 시부터 구글의 특허권 남용을 우려하였으며, 부당한 특허권 행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IT 산업 분야에서 산업표준기술을 설정하는 것은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기술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일단 산업표준기술이 설정된 후에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표준기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표준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허 위협(patent hold-up)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설정기구는 구성원들에 대하여 자사의 기술이 표준필수특허로 채용될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적이지

않은 조건(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에 따라 특허에 관한 라이선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EU 경쟁총국은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독일에서 판매금지 청구를 신청한 것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가 금지청구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경쟁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지만, 라이선스 이용을 요청한 사업자가 FRAND 조건에 따른 라이선스 이용 조건을 받아들일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가 표준필수특허의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판매금지 명령을 구하고 이를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EU 경쟁총국은 모토로라가 애플에 대해서 표준필수특허의 유효성이나 특허 침해 여부를 다룰 수 없다는 규정을 받아들일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가 표준필수특허의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판매금지 명령을 구하고 이를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U 경쟁총국의 조사는 구글이 판매금지청구를 통해 경쟁사를 압박하는 것을 금지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의 동의명령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EU 경쟁총국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도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다. EU 경쟁총국은 2013년 5월경 애플이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업체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려 했는지에 대한 질문지를 관련 이동통신회사들에 발송하였다. 이 질문지에는 애플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 의무판매 물량을 할당했는지, 마케팅 비용에 제한을 두도록 했는지, 보조금 및 판매기간 등 애플의 판매조건을 다른 휴대폰 제조사보다 유리하게 제시하도록 강요했는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이폰이 유럽 지역에서 초고속 4G 망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 또는 계약상의 제한을 두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⁵ EU 이사회 규정 1/2003 제9조에 근거한 동의명령제도는 경쟁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지만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경쟁상 우위를 해소시킬 수 있는 자진시정방안(commitment)을 제시하면 당해 행위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는 대신, 사업자의 자진시정방안에 구속력을 부여해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위반할 때에는 전 세계 관련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페어서치는 2013년 4월 10일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제조사들을 압박하여 스마트폰 기기의 출사를 취소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하였다고 EU 경쟁총국에 신고하였다. 나아가 페어서치는 구글이 단말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구글 지도, 유튜브, 구글 플레이 등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선탑재하도록 강요하여 경쟁업체들이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없게 제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EU 경쟁총국은 2013년 6월 13일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질문서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구글이 모바일운영체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는지에 대한 예비 조사를 진행 중이다.

3. 평가 및 시사점

온라인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하여 EU 경쟁총국은 인터넷 시장과 같이 빠르게 기술이 진보하고 사업모델이 급변하는 시장에서는 장기간의 심의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해결책을 신속히 제시해 경쟁 왜곡을 시정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동의명령 제도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구글이 제시한 자진시정방안의 내용에 대하여 경쟁사업자들은 인터넷 시장 경쟁을 회복하는 실용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EU 경쟁총국에 이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를 약 20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2013년 1월 3일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⁶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자사의 전문검색 결과를 상위에 전시하는 검색 차별 행위는 구글이 사용자에게 최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려는 것에서 비

롯된 것이고, 그 결과 소비자들의 이익이 증대되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경쟁법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임을 재확인하였다.⁷

이와 같은 미국과 EU의 입장 차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 의지 및 시장 상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EU 경쟁총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시장에서의 경쟁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특별한 의무(special responsibility)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한편,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유럽에서는 90%를 넘지만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야후가 약 3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유럽에서 훨씬 강하다는 점 등도 EU가 미국과 상반된 결론에 이른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⁶ 다만 구글은 검색광고 플랫폼 개방, 특허권 행사에 있어 FRAND 조건 준수, 판매금지 소송을 통한 경쟁사 압박 금지 등을 약속

⁷ Federal Trade Commission (2013). Statement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Regarding Google's Search Practices In the Matter of Google Inc (FTC File Number 111-0163).

좁은 문: 유럽의 여성 정치 리더십

Glass Ceiling: The Female Political Leadership in Europe

In the late 9th century, women in the western world except New Zealand, a colony of the U.K. at the time, did not have the right to vote,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human's political rights. In the 21st century, most of the countries granted the political right to adult women although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is still limited even in Europe due to the barrier to political intervention. Of course, there have been many successful cases of female political leaders since the 20th century. There are examples who were appointed as the national sovereign not by heredity but election or nomination such as Vigdis Finnbogadottir the president of Iceland, and Mary Robinson the president of Ireland, Tarja Halonen the president of Finland, Margaret Thatcher the prime minister of United Kingdom, Angela Merkel the prime minister of Germany and so forth. Despite such successful cases, however, female politicians in Europe find it difficult to bring down the barrier when entering and advancing in politics.

19세기 말 서구 여성은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정치적 기본권에 준하는 투표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이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여성 참정권 운동이 확산되는 등 새로운 움직임이 전 세계에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과 캘리포니아 등 일부 서부 주가 주도한 성인 여성 참정권 운동은 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유럽 지역에서는 1930년대에 프랑스, 이탈리아, 구 유고연방, 벨기에(지방선거에서는 1919년에 채택), 그리고 스위스

등을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가 개헌을 통해 여성 참정권을 도입했다. 그리고 마침내 21세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전 세계 국가가 성인 여성 참정권을 채택했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정치권 진입 장벽으로 인해 유럽에서마저도 여전히 제한적이다. 정치권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승진장벽이 치밀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고위급 여성 정치 지도자가 드물었다. 물론 20세기 이후에는 유럽에서 여성이 정치 리더로 성공한 사례도 많다. 세습이 아닌 선출직이나

★ 의회 선거에서 여성 후보 할당 현황

구분	정당의 자발적 할당 책정	여성 후보 할당 배정의 법제화	
단원제	덴마크 (1915년), 스웨덴 (1921년), 룩셈부르크 (1919년), 헝가리 (1918년), 리투아니아 (1918년), 슬로바키아 (1920년), 크로아티아 (1945년), 키프로스 (1960년)	여성 할당 법령 제정	핀란드 (1906년)
		여성 할당 법령 제정 & 헌법 조문	그리스 (1930/1952년)
		할당 위반 시 제재	포르투갈 (1931년) [정치자금 제재]
양원제	노르웨이 (1913년), 아이슬란드 (1915년), 네덜란드 (1919년), 영국 (1918/1928년), 루마니아 (1938년)	할당 위반 시 제재 & 정당 명부 내 성별 순번제 의무 법령	폴란드 (1917년), 스페인 (1931년) [정당 명부 등록 거부]
		할당 위반 시 제재 & 정당 명부 내 성별 순번제 & 헌법 조문	프랑스 (1944년) [정치자금 제재]
		여성 할당 법령 제정	아일랜드 (1918/1922년), 슬로베니아 (1945년)
		여성 할당 법령 제정 & 헌법 조문	이탈리아 (1942년)
연방제	오스트리아 (1919년), 독일 (1918년), 체코 (1920년), 스위스 (1971년)	할당 위반 시 제재 & 정당 명부 내 성별 순번제 의무 법령 & 헌법 조문	벨기에 (1919/1948년) [정당 명부 등록 거부]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여성 참정권이 정립된 연도. 두 개의 연도가 표시된 것은 지엄적으로 시행된 시기와 전국적으로 도입된 시기를 의미. 에스토니아(1917년), 라트비아(1917년), 불가리아(1938년)는 현재 의회 선거에서 여성 후보 할당에 관한 조치가 미비해서 표에서 생략